

노스 캐롤라이나 상무부

고용 안전부

실업 보험



노스 캐롤라이나 주

평가 위원회

의제

고위 당국 결정 번호

수신:

원고

고용주

N.C.GEN.STAT. §96-15 (e)에 의거하여, 이 사유는 항소 심판의 (결정) (기각 명령)에 대한 항소 번호 인 **의 항소**를 고려하기 위해 평가 위원회 앞에 제기되었습니다.

N.C. GEN. STAT. §96-15 C 는 관련 부분에서 다음을 제공합니다:

항소가 항소 심판 또는 청문관의 결정에 의해 취해질 때마다; 항소하는 당사자는 항소 제기 근거를 포함하는 명확한 진술서를 항소를 취하기 위한 법적 허용 기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적시에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평가 위원회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04 N.C. Admin. Code 24C .0501 에 의거하여, 일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우편 발송 된 항소 심판의 (결정) (명령) 페이지(들)의 “근거” 요구 사항에 대해 당사자들이 통보 받은 것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폐지 권리 정보가 나타납니다:

이 결정은 우편 발송일로부터 십 (10)일 이내에 항소 당사자가 항소 근거가 기재된 명확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본부의 최종 결정입니다. 그러한 진술서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상무부

고용 안전부

실업 보험



또한 정확히 다음과 같은 진술이 (원고) (고용주)로부터 수령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 진술서에는 분명하게 (원고의) (고용주의) 항소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의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서면 진술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N. C. Gen. Stat. §96-15 C 및 N. C. Gen. Stat. §96-15 C 의 필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이유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항소가 기각될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 의 항소는 기각됩니다.

항소 심판의 (결정) (기각 명령)은 최종적입니다.

평가 위원회 위원 (Keith A. Holliday) 및 (Stan Campbell) 이 항소에 참가하여 이 결정에 동의합니다.

이 (날짜) .

평가 위원회

이사회 의장

평가 위원회 위원장

노스 캐롤라이나 상무부

고용 안전부

실업 보험



주의: 고위 당국 결정은 우편으로 송부한 날로부터 삼십 (30)일 후에, 법원 심의를 위한 청원이 아래에 명시된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 최종이 됩니다. 우편 날짜는 이 결정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회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고위 당국 결정에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안내는 동봉된 팜플렛을 참조하십시오. 팜플렛은 주 전역의 공공 고용 사무소 및 고용 안전부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www.des.nc.gov 를 통해 고용 안전부 웹 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방문하여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심사를 위한 항소

이 고위 당국 결정에 대한 항소는 청원자로부터 그 또는 그녀가 거주하는, 또는 청원자의 주된 사업 장소가 있는 카운티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노스 캐롤라이나 주 어느 카운티에도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항소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 웨이크 카운티의 또는 논쟁이 일어난 노스 캐롤라이나 카운티의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은 N.C. Gen. Stat. §§ 96-15(h) 및 (i)에 의거하여, 법원의 검토를 위한 청원서가 적시에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 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된 사법 심사 청원서 사본은 청원 접수 후 십 (10)일 이내에 고용 안전부 ("Division") 및 소송에 기록된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원서 사본은 개인적 서비스 또는 공인 우편으로 송달 받아야 하며, 수령 확인이 요청됩니다. 고등 법원 검토를 위한 청원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업무 처리를 위해 등록된 요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A. John Hoomani)
General Counsel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Post Office Box 25903
Raleigh, NC 27611-5903

주의: 귀하가 다른 당사자의 사법 심사 청원서를 받은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 심사 절차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1) 귀하가 심사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청원서를 받은 후 십 (10)일 이내에 고등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2) N.C. Gen. Stat. § 1A-1, Rule 24 에서 제공된 것과 같이 개입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04 N.C. Admin. Code 24A .0105(32) (고용주의 실업 보험 관리자로 일하는 제 3 자의 개인 포함)에 정의된 법정 대리인은 면허가 있는 변호사이거나 Gen. Stat. Ch. 84 및 § 96-17(b). 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변호사가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변호사 감독의 통지 및 / 또는 증명은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 절차의 법적 대리는 N.C. Gen. Stat. Ch. 84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상무부

고용 안전부

실업 보험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발송됩니다.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을 가집니다.

2013 년 6 월 30 일 이후에 제기 된 클레임의 경우, 원고는 이후 항소에서 취소된 행정 또는 사법 결정에서 수령된 급여의 상환 대상이 됩니다. N.C. Gen. Stat. § 96-18(g)(2).

항소 제기:

결정 전달: